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도로명 안내표지의 운영과정에서 직진방향 정보 표기방법, 직진, 좌·우회전 금지표시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규격(KS) 번호 및 명칭 변경 반영(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나. 고속국도의 진입부 및 연결로 분기부에서 필요에 따라 근거리 안내지명 등 2지명을 안내 수 있도록 개선(안 제32조)

다. 고속국도 IC 신설에 따른 고속국도 65호선 원거리 안내지명 변경(별표 5)

‘동부산 IC’ 신설에 따라 기존 원거리 안내지명 ‘부산’을 ‘동부산’으로 변경

라.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 방향 도로명 표기 방법 개선(별표 20)

직진과 회전방향 도로명이 같을 경우 및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에 새로운 도로명이 있을 경우에 직진방향 도로명 표기 가능

마.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 방향 정보를 중앙정렬로 변경 및 화살표 위치 개선(별표 2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를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로, “(플라스틱)”을 “(플라스틱-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 (PVC-U) 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제1부: 두께 1 mm 이상)”으로,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시트-유형, 치수 및 특성)”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KS A 3507”을 “KS T 3507”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KS A 3507”을 “KS T 3507”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속국도 진입부 및 연결로 분기부의 방향표지(425-4(A), 425-4(B))  
에서는 방향별로 2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5의 원거리 안내지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선번호	노선명	원거리 안내지명
65	동해선(부산-포항) 동해선(삼척-속초)	동부산, 울산, 포항 삼척, 강릉, 속초

별표 20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6의 425-4(A)를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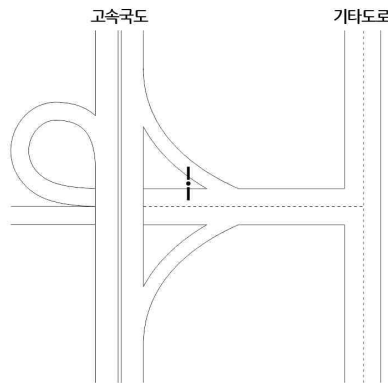
표지번호 및 명칭 425-4(A) 방향표지 (고속도로 진입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 고속도로 진입부의 분류지점에 편지식(T자)으로 설치한다.
- 방향별로 1지명 또는 2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비고

별표 26의 425-4(B)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425-4(B) 방향표지 (연결로 분기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로 분기부에 편지식(T자)으로 설치한다.</li> <li>방향별로 1지명 또는 2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li> </ul> 
비고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표지판의 재료 및 제작)</p> <p>①표지판의 기관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 또는 보강 처리된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u>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1종 혹은 2종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강도를 갖는 금속판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u>KS M ISO 11833-1(플라스틱)의 표5의 그룹1 또는 <u>KS M ISO 11963(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시트)등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폴리카보네이트는 표지판 규격이 400×400cm 이하의 경우에 사용한다. 그 외 재료를 사용하여</u></u></u></p>	<p>제7조(표지판의 재료 및 제작)</p> <p>①----- ----- ----- ----- <u>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u> ----- ----- ----- <u>KS M ISO 11833-1(플라스틱-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 (PVC-U) 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제1부: 두께 1 mm 이상)-----</u> ----- <u>KS M ISO 11963(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시트-유형, 치수 및 특성)-</u> ----- -----</p>

현 행	개 정 안
<p>표지판을 제작할 경우 위의 재 료로 제작한 표지판과 동등 이 상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p>	<p>----- ----- -----.</p>
<p>②~⑫ (생 략)</p>	<p>②~⑫ (현행과 같음)</p>
<p>제10조(반사지의 재료 및 제작)</p>	<p>제10조(반사지의 재료 및 제작)</p>
<p>①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u>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u>에 따르며, 도로 표지에 관한 입사각 및 관측각 에 대한 내용은 별표 11과 같 다.</p>	<p>①----- ----- <u>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u>----- ----- ----- ----- -----.</p>
<p>②~⑧ (생 략)</p>	<p>②~⑧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시험 및 감독)</p>	<p>제11조(시험 및 감독)</p>
<p>① (생 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 는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노 출시험 또는 <u>KS A 3507</u>에서 정하는 인공내후성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 의 균열 및 탈리 현상이 생기 지 않아야 하며, 접착후 10년동 안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 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 ----- <u>KS T 3507</u>----- ----- ----- ----- ----- ----- -----.</p>
<p>③~④ (생 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